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(행정안전부훈령)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으로 통합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함(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).

나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항목에 비목을 추가함(안 제7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- 2)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1. 21.~2. 10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지출방법”을 “지출방법, 비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기본원칙)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<u>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</u>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해야 한다.</p> <p>제6조(집행기준)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「<u>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</u>」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사용내역 공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, 집행일자(시간 포함), 집행장소, 집행목적, 집행금액, 집행대상, <u>지출방법</u>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4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</u>----- -----.</p> <p>제6조(집행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</u>」----- -----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사용내역 공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출방법, 비목</u>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이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(행정안전부훈령)으로 통합 및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별도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재무국 재무과 김향숙 (02-2133-3228)